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연구실적 인정 지침

제1조(목적)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제2조의2제4항 및 2024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, 신설학과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개인별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정범위) ① 연구실적 범위는 「교원업적평가 규정」제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분하며 실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문실적
2. 저·역서 실적
3. 공연·발표·전시·창작물 실적
4. 지식재산권 실적

② 논문실적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한하며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전국규모전문학술지
2. 국제전문학술지
3. 국외전문학술지

③ 저·역서 실적은 전문학술저서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④ 공연·발표·전시·창작물 실적은 필수업적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⑤ 지식재산권 실적은 국내외 특허실적과 실용신안·디자인/의장권, 기타지적소유권(소프트웨어, 저작권, 반도체배치설계권)에 한하여 인정한다.

제3조(인정점수 및 기준) ① 인정점수는 교원업적평가에서 인정한 점수로 산출하며,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점수를 합산한다.

② 신설학과 참여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계열별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문사회계열: 400점 이상
2. 이공계열: 600점 이상
3. 예술계열: 300점 이상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